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7년 7월 5일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7년 7월 5일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7년 7월 11일(제1차 총무위원회)
- 마. 의안번호 : 제2007 - 19호

2. 개정이유

그 동안 법정리와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하여 조례를 각기 따로 제정·운영하고 있었고, 법정리는 조례제명을 보고 쉽게 찾을 수 있으나, 행정리는 「이장정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군민이 행정리에 관하여는 찾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 두 조례를 통·폐합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 개정에 따라 조례명을 띄어쓰기(제명)
- 나. 「거창군 이장정수 조례」를 「거창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 관한조례」에 통합함(안 제1조부터 제3조)
- 다. 행정리 명칭 중 거창읍 서변리의 “사지”를 “사마”로, 웅양면 “유령”을 “누룩재”로 변경함(안 제3조의 별표 2)
- 라. 「거창군 이장정수 조례」를 폐지함(안 부칙 제2항)

4. 검토보고 요지

- 동 조례안은 그 동안 법정리와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하여 조례를 각기 따로 제정·운영하고 있었고, 법정리는 조례제명을 보고 쉽게 찾을 수 있으나, 행정리는 이장정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군민이 행정리에 관하여는 찾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 두 조례를 통·폐합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서
 - 이는 제130회 임시회(2006. 7. 24)에서 「거창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시에 2개의 조례인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와 「거창군 이장정수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4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에 의해 제정되었고, 조례내용이 상호 밀접하므로 이를 통합·운영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금번 임시회에 통합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이 제출된 것이며,
- 아울러 이번 조례개정시 행정리 명칭변경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거창읍 서변리의 사지마을과 웅양면의 유령마을에서 행정동리명 변경건의가 있어 사지마을→ 사마마을, 유령마을→ 누룩재 마을로 변경하려는 것임.
- 이에 대하여 관계법 등 규정을 살펴본 결과 『지방자치법』 제4조 4항(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의하면 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행정구역 명칭변경시 주민의견 조사기준이 전체 세대중 80%이상 찬성을 얻어 건의하는 등

- 동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와 행정 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 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상위법령 저촉사항이나 관련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므로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 내용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그러나 이번 행정마을명이 개정됨에 따라, 향후 지도 및 군도 작성, 마을 이정표, 군지, 각종 공부 등 재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검토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